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 1의 제2호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한우·육우)에 대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50m 이내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수정(안 별표 1)
 - 개정안
 - 소(한우·육우·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 수정안
 - 소(한우·육우) : 250m 이내
 - 젖소·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 분	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	-	250m 이내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20,000마리 미만	25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450m 이내
	50,000마리 이상	65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분	제한거리	구분	제한거리	구분	제한거리		
소(한우·육우,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400마리 미만	소(한우·육우·젓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소(한우·육우),	-	250m 이내
	400마리 이상				70m 이내	젓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젓소	400마리 미만						
	400마리 이상						11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20,000마리 미만	닭(육계)	20,000마리 미만	250m 이내	닭(육계)	20,000마리 미만	25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45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450m 이내	
	50,000마리 이상		650m 이내	50,000마리 이상		65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10마리”를 “8마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미시 조례 제1228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에 관한 특례)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이행기간의 유예기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1.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소(한우·육우),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동지역	전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노상리,동부리,화조리, 이문리,완전리	교리,노상리,동부리,화조리, 완전리,이문리
고아읍	관심리,대망리,신촌리,황산리,황산 리, 외예리,내예리,원호리,문성리,항곡 리, 예강리,오로리,봉한리	관심리,이례리,오로리,대망리,신촌 리,황산리,황산리,외예리,내예리,원 호리,문성리,다식리,괴평리,송림리, 봉한리,항곡리,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송삼리,무등리,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주아리, 농소리
도개면	궁기리	궁기리
해평면	월호리	월호리,낙성리,오상리,괴곡리, 문량리,송곡리,해평리
산동면	적림리,성수리	동곡리,도중리,적림리,신당리,임천 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상장리,하장리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 분	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	—	250m 이내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20,000마리 미만	25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450m 이내
	50,000마리 이상	65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m이내 구역(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부지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생략)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4.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 : <u>10마리</u> 이하	라. -- <u>8마리</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구미시 조례 제1228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8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u><신 설></u>	<u>제4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에 관한 특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이행기간의 유예기간에 따른다.</u>